



### <자동이체 거래 약관>

**제1조(약관의 적용)** 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(이하 “자동이체” 라 한다)에 의하여 실업크레딧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납부자” 라 한다)와 국민연금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**제2조(출금)** ① 납부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공단이 지정하는 납부일(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에 출금, 대체 납부됩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될 수 있습니다.

**제3조(과실 책임)**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(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이 납기일 현재 공단이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, 예금의 지급제한,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**제4조(전액출금)** 전액출금방식으로 출금처리 함에 따라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동잔액에 대하여 출금하지 않습니다.

**제5조(출금 우선순위)** 납기일에 동일한 여러 종류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납부자의 거래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**제6조(신청서 제출 기한 등)** 본 자동납부(신규, 해지, 변경) 신청사항은 당월 자동이체신청 마감일 까지 처리된 경우 당월분부터 적용됩니다. 다만, 신청내용이 사실과 달라 자동납부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**제7조(출금기준)**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며 이체 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 처리됩니다.

**제8조(정보제공)**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(납부자명, 주민등록번호, 거래 은행명, 계좌번호 등)가 금융결제원 및 납부자 거래은행에 제공됩니다.

**제9조(약관의 변경)** 공단은 약관을 변경하려면 30일 동안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, 신청인 또는 납부의무자가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해당 게시 기간 내에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해당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**제10조(다른 약관과의 관계)** 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,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.

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.